

---

2017년도

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

---



보건복지부

# · I 자격신고

## 1 개요

### 가. 추진 배경

- 응급구조사 자격·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응급구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

### 나. 추진 경과

-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 및 시행
  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6.5.29 공포, '17.5.30 시행) 및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시행('17.5.30.)

### 다. 법적 근거

##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- 제36조의3(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)**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라. 자격신고 수리 업무 관련 위탁

### (1)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수리업무 위탁 기관 : 대한응급구조사협회

##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26조의 3(업무의 위탁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
2.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
3.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,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, 사업집행현황,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# (2)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 업무 위탁 기관 :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

##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26조의2(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)**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##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

### 가. 자격신고 대상 : 모든 응급구조사

-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

### 나. 신고주기 및 기간 :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

####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연도별 자격신고기간

#### (1) '17.5.29. 이전 자격 취득자 : 일괄신고 실시

- 최초 일괄신고 : '17. 5. 30.부터 '18. 5. 29.까지
-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
  - ('17.5.30.~'17.12.31.)에 신고하였으면, '20.1.1.~'20.12.31.에 재신고
  - ('18.1.1.~'18.5.29.)에 신고하였으면, '21.1.1.~'21.12.31.에 재신고

#### (2) '17.5.30. 이후 신규 자격 취득자 :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

그룹명	자격 발급 연도	최초 신고 연도	차기 신고 연도
3A	2017.5.31~2017.12.31	2020	2023
3B	2018.1. 1~2018.12.31	2021	2024
3C	2019.1. 1~2019.12.31	2022	2025
}	}	}	}
산식	X	(X+3)	(X+6)

\* 자격을 '17.6.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020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

❖ 본인의 자격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(lic.mohw.go.kr)

### 다. 신고내용 : 취업상황 등 신고서

- 기본 인적사항\*, 취업상황,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

\* “연락처” 중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1가지 이상 반드시 작성

## 라. 신고방법 및 절차-일괄신고 대상자 ('17.5.29.이전 자격 취득자)

### 일괄신고 방법 ('17.5.30.~'18.5.29.)

#### 1-1 보수교육 대상자 : 이수자

- (1)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의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직접 접속\*하여 “취업상황 등 신고서” 작성 → 협회장에게 제출

##### 【첨부서류】 보수교육이수증

- ① '17.5.30.~'17.12.31. 신고자는 '16년도 보수교육 이수증
- ② '18.1.1.~'18.5.29. 신고자는 '17년도 보수교육 이수증

\*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응급구조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

\*\*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(자격 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)

- (2)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'수리' 및 '반려' 결정 통지

##### 【신고요건】

- 보수교육 이수자
  - 연간 4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
-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기관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)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
- 협회는 교육 이수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을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
  - 단,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
  - ※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, 우편 송달 비용은 협회가 부담

(1)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사협회 홈페이지의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직접 접속\*하여 “취업상황 등 신고서” 작성 → 협회장에게 제출

**【첨부서류】** 보수교육 면제확인서

- ① '17.5.30.~'17.12.31. 신고자는 '16년도 보수교육 면제확인서
- ② '18.1.1.~'18.5.29. 신고자는 '17년도 보수교육 면제확인서

\*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응급구조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

\*\*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(자격 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)

(2)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'수리' 및 '반려' 결정 통지

**【신고요건】**

○ 보수교육 면제자
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신청 후 면제확인서 제출)

\* 보수교육 면제신청자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면제 여부 확인 가능

○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기관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)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

○ 협회는 교육 면제자에게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

- 단,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

※ 이수증 및 확인서 등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, 우편 송달 비용은 협회가 부담

## 2-1 보수교육 비대상자 ('17.5.30.~'17.6.30.)

(1)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사협회에 “취업상황 등 신고서” 작성하여 E-mail, 팩스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

【첨부서류】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① '17.5.30.~'17.12.31. 신고자는 '16년도 보수교육 비대상자 증명 서류

② '18.1.1.~'18.5.29. 신고자는 '17년도 보수교육 비대상자 증명 서류

\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

(2)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'수리' 및 '반려' 결정 통지

○ E-mail, 팩스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수리·반려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주며, 불가피한 경우 우편 송달

※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, 우편 송달 비용은 협회가 부담

(3) 협회장은 신고 내용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고, 자격신고시스템에 대리로 입력한다.

## 2-2 보수교육 비대상자 ('17.7.1.~)

(1)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사협회 홈페이지의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직접 접속\*하여 “취업상황 등 신고서” 작성 → 협회장에게 제출

【첨부서류】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① '17.5.30.~'17.12.31. 신고자는 '16년도 보수교육 비대상자 증명 서류

② '18.1.1.~'18.5.29. 신고자는 '17년도 보수교육 비대상자 증명 서류

\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

- \*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응급구조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
- \*\*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(자격 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)

**(2)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'수리' 및 '반려' 결정 통지**

-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기관(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)에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비대상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보수교육 비대상자 여부를 확인함

**일괄신고 이후 신고 방법 ('20.1.1.~)**

**(1) 신고기간**

- ('17.5.30.~'17.12.31. 일괄신고자) '20.1.1.~'20.12.31.에 신고
- ('18.1.1.~'18.5.29. 일괄신고자) '21.1.1.~'21.12.31.에 신고

**(2) 신고방법**

-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의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직접 접속\*하여 “취업상황 등 신고서” 작성 → 협회장에게 제출

**【첨부서류】 직전 3개년도** 보수교육이수증, 보수교육 면제확인서,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- ① '17.5.30.~'17.12.31. 신고자는 '17, '18, '19년도 관련 서류
- ② '18.1.1.~'18.5.29. 신고자는 '18, '19, '20년도 관련 서류

(예시) '17.5.30. 일관신고 한 A씨는 '20.1.1.~'20.12.31.에 2차 자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이 때 A씨는 '17년 보수교육 관련서류(이수증·면제확인서·보수교육 비대상자 여부 확인), '18년 보수교육 관련 서류, '19년 보수교육 관련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\*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응급구조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

\*\*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(자격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)

- **협회장은**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'수리' 및 '반려' 결정 통지

**【신고요건】**

- 보수교육 이수, 면제, 비대상자 확인

-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기관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)에 주기적으로 이수·면제·비대상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
  - 협회는 교육 이수·면제·비대상자에게 관련서류를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
  - 단,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
- ※ 이수증 및 확인서 등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, 우편 송달 비용은 협회가 부담

**마. 신고방법 및 절차-일괄신고 대상자 ('17.5.30.이후 자격 취득자)**

(1) 신고기간

-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 까지 신고

자격 발급 연도	최초 신고 연도	차기 신고 연도
2017.5.30~2017.12.31	2020.1. 1~2020.12.31	2023.1. 1~2023.12.31
2018.1. 1~2018.12.31	2021.1. 1~2021.12.31	2024.1. 1~2024.12.31
2019.1. 1~2019.12.31	2022.1. 1~2022.12.31.	2025.1. 1~2025.12.31
}	}	}
X	(X+3)	(X+6)

(2) 신고방법

-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의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직접 접속\*하여 “취업상황 등 신고서” 작성 → 협회장에게 제출

**【첨부서류】** 직전 2개년도 보수교육이수증, 보수교육 면제확인서,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\*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다음 연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임

(예시) '17.12.30. 자격을 취득한 A씨는 '20.1.1.~'20.12.31.에 최초 자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이 때 A씨는 '18년 보수교육 관련서류(이수증·면제확인서·보수교육 비대상자 여부 확인), '19년 보수교육 관련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\*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응급구조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

\*\*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(자격 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)

-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'수리' 및 '반려' 결정 통지

#### 【신고요건】

- 보수교육 이수, 면제, 비대상자 확인
-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기관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)에 주기적으로 이수·면제·비대상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
- 협회는 교육 이수·면제·비대상자에게 관련서류를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
- 단,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
- ※ 이수증 및 확인서 등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, 우편 송달 비용은 협회가 부담

## 차기 신고

### (1) 신고기간

- 최초 자격신고를 한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 까지 신고
- ※ (예시) '21년에 최초 자격신고를 한 경우, '24.1.1.~'24.12.31.까지 자격 신고 실시

### (2) 신고방법

-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의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직접 접속\*하여 “취업상황 등 신고서” 작성 → 협회장에게 제출

**【첨부서류】 직전 3개년도 보수교육이수증, 보수교육 면제확인서,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**

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)

(예시) '17.12.30. 자격을 취득하여 '20.3.28. 최초 자격신고를 한 A씨는 '23년에 두 번째 자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이 때 A씨는 '20년 보수교육 관련서류 (이수증·면제확인서·보수교육 비대상자 여부 확인), '21년 보수교육 관련 서류, '22년 보수교육 관련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\*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응급구조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

\*\*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「자격신고시스템」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(자격 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)

○ **협회장은**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'수리' 및 '반려' 결정 통지

#### **【신고요건】**

○ 보수교육 이수, 면제, 비대상자 확인

-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기관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)에 주기적으로 이수·면제·비대상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

- 협회는 교육 이수·면제·비대상자에게 관련서류를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

- 단,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

※ 이수증 및 확인서 등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, 우편 송달 비용은 협회가 부담